

전파법 개정으로 전파차단장치 교육·훈련 제도화

- 협회, 안티드론 운용역량 교육체계 마련 의견 제출 -

발행일 2026. 8. 14. | 제2026-2호

전파차단 장치의 교육·훈련 사용이 제도화되면서, 안티드론 정책의 중심은 '장비 도입'에서 '안전한 운용역량 확보'로 확대

□ 개정 추진 배경

가. 실전형 교육·훈련 근거 마련

- 불법드론 대응 수요와 전파차단장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,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는 장비의 교육·훈련에는 명확한 법적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
- 이에 통제된 장소와 승인된 계획 아래 교육·훈련, 장비정비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

나.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경과

- 2026. 4. 21. 개정 전파법 공포(법률 제21553호), 2026. 10. 22. 시행 예정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장소 지정, 신고·심사, 감독 및 사용이력 관리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
- 입법예고 기간: 2026. 7. 21. ~ 8. 31. 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-779호)

□ 안티드론 분야 관련 주요 내용

가. 교육·훈련 장소 지정 및 신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변 전파이용 현황과 전파영향 등을 고려해 교육·훈련 장소를 지정·고시

-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은 교육·훈련 등의 계획과 관련 서류를 갖춰 사전 신고

나. 신고 심사 및 현장 감독

- 주파수의 적정성과 사용 목적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,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
- 교육·훈련 현장 감독을 위해 전파감독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전파차단장치 관리체계 강화

- 장치 도입·폐기 신고 대상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
- 사용 목적, 일시·장소, 사용자, 장치의 인가번호·명칭·일련번호 등을 사용이력으로 기록
- 정부가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

□ 항공보안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의미

가. 장비 중심에서 운용역량 중심으로 전환

-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작동하는 교육·훈련의 법적 경로가 마련되어 현장 대응인력의 장비 숙달과 관계기관 합동훈련 기반이 확대
- 다만 장소 지정과 신고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, 실제 조작자의 교육·평가와 기관 간 공통 대응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

나. 전 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장소 지정 → 사전 신고·심사 → 현장 감독 → 사용이력 기록·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통해 비의도적 전파 혼신과 오조작 위험을 줄이는 방향

□ 협회 의견서 제출

우리 협회는 2026년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「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

- 협회는 국가기관 등의 전파차단장치 교육·훈련 허용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
- 제도가 실제 안티드론 대응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작자 안전교육과 운용역량 평가, 실습·합동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준 마련을 건의
- 항공경비요원과 국가중요시설 대응인력의 임무와 권한에 맞는 단계별 교육체계를 국토교통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

□ 결론

이번 개정은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한 안티드론 교육·훈련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, 장비의 안전한 사용뿐 아니라 실제 운용자의 역량, 관계기관 합동대응 및 반복훈련을 뒷받침하는 교육체계가 함께 반영될 필요

※ 참고자료

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-779호 입법예고](#) | [전파법 제정·개정이유\(법률 제21553호\)](#)